

2017년도 안전성조사 계획 및 리콜(Recall)제도 가이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목 차

I 우리나라 제품안전관리제도(사전+사후)

II 리콜제도 가이드

III 리콜제도 운용(생활용품 안전성조사 진행절차)

IV 질의 및 답변

I. 제품안전관리제도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제품 제외)

자동차

국토해양부/
환경부(배기가스관련)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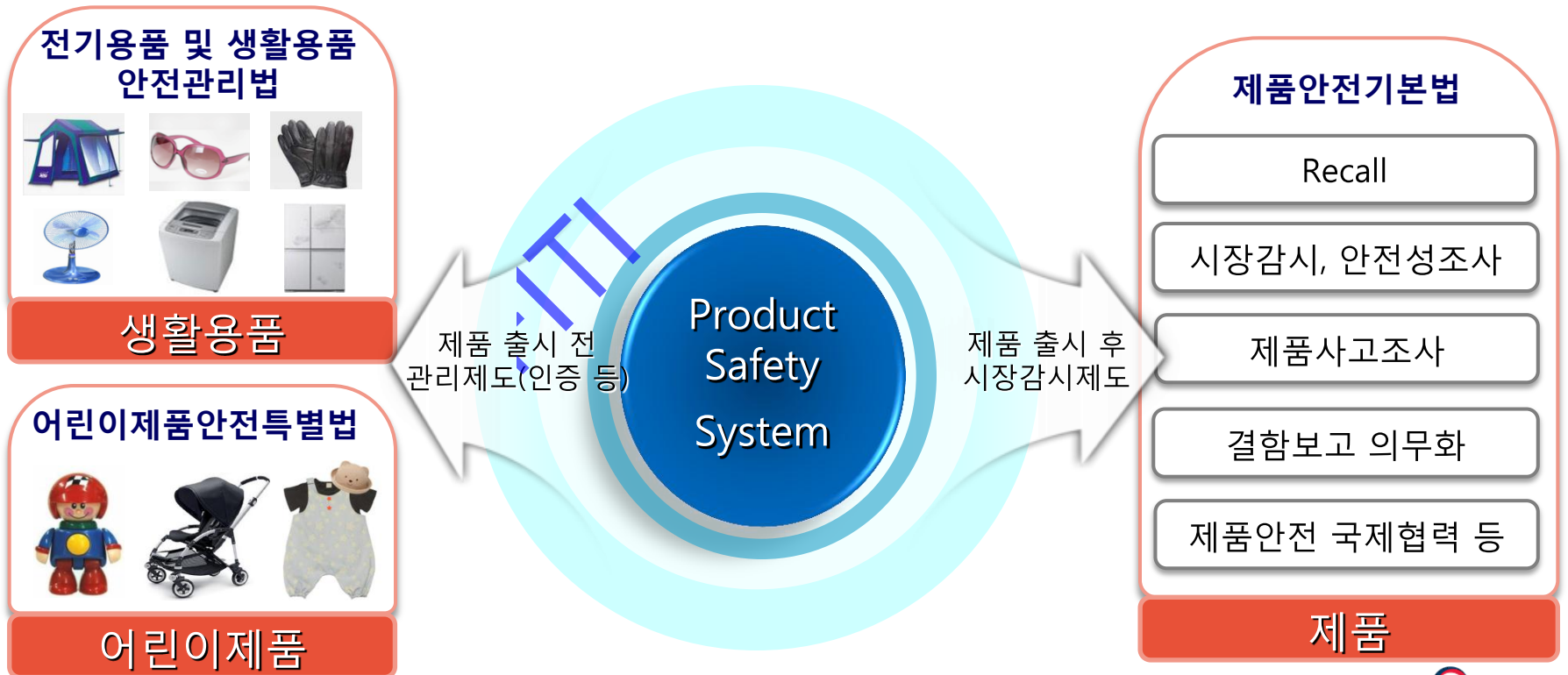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해당 공산품 관련법
(소관 중앙행정기관)

I. 제품안전관리제도

□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제품(타부처 관리제품 제외)에 대해 제품 시장 출시 전·후 쏘주기에 걸쳐 제품안전관리 실시

- 제품출시 前 안전성확인제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제품출시 後 결함제품 리콜관련 : 제품안전기본법



I. 제품안전관리제도

□ (시장출시 前) 사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인증 등* 을 통해 확인 후 시장에 출시토록 의무화

* 소비자 위해정도에 따라 3단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로 안전관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높음

← (소비자의 위해도) → 낮음

구 분	마크	대상품목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용품)	적 용 절 차
① 안전인증	 <small>안전인증 번호:</small>	54품목(39/11/4)	제품시험 → 공장심사 → 인증 → 판매
② 안전확인	 <small>안전확인 신고 확인을 번호:</small>	112품목(63/32/17)	제품시험 → 신고 → 판매
③ 공급자 적합성확인		129품목(71/41/15)	제품시험 → 판매

I. 제품안전관리제도

□ (시장출시 後) 안전성 조사 또는 제품사고 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리콜(권고 또는 명령) 및 고발 조치

수리

해당제품의 부품교환 등으로 결함의 완전한 시정이 가능

교환

결함이 없는 동종 또는 동등한 다른 제품과 교체

환급

결함제품의 수리, 사용이 불가능할 때 구입가격을 환불

리콜(Recall)

파기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제거와 보관비용 절감이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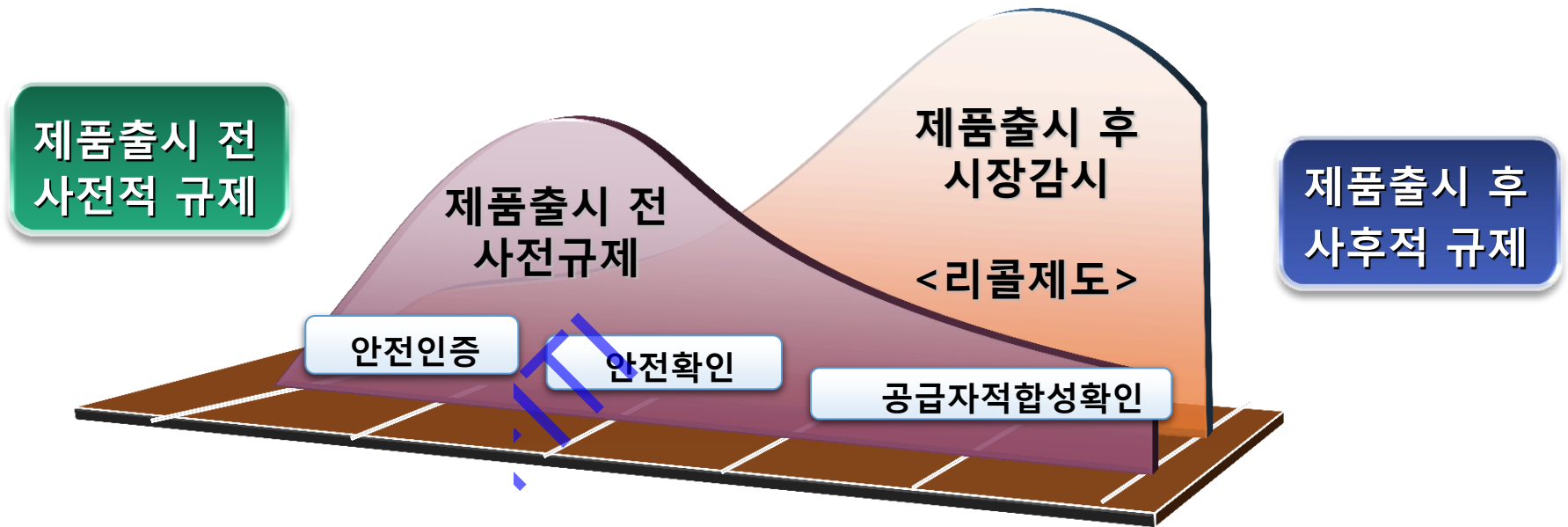
자발적 리콜

사업자 스스로 리콜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고에 의한 리콜도 포함

강제적 리콜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 명령에 의한 사업자가 리콜절차를 개시하는 것

I. 제품안전관리제도



II. 리콜제도 가이드



제품별 안전기준이 궁금할 때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



제품의 안전정보가 궁금할 때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불법·불량제품 신고할 때
한국제품안전협회 www.ksafety.kr



관련법령이 궁금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RECALL

공산품 리콜제도 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7737) 충북 음성군 명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 1600-1384 / 인증표준 콜센터 : 138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II. 리콜제도 가이드

01 제품안전성조사란?

-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해 검증·검사·평가하는 일체의 활동

02 리콜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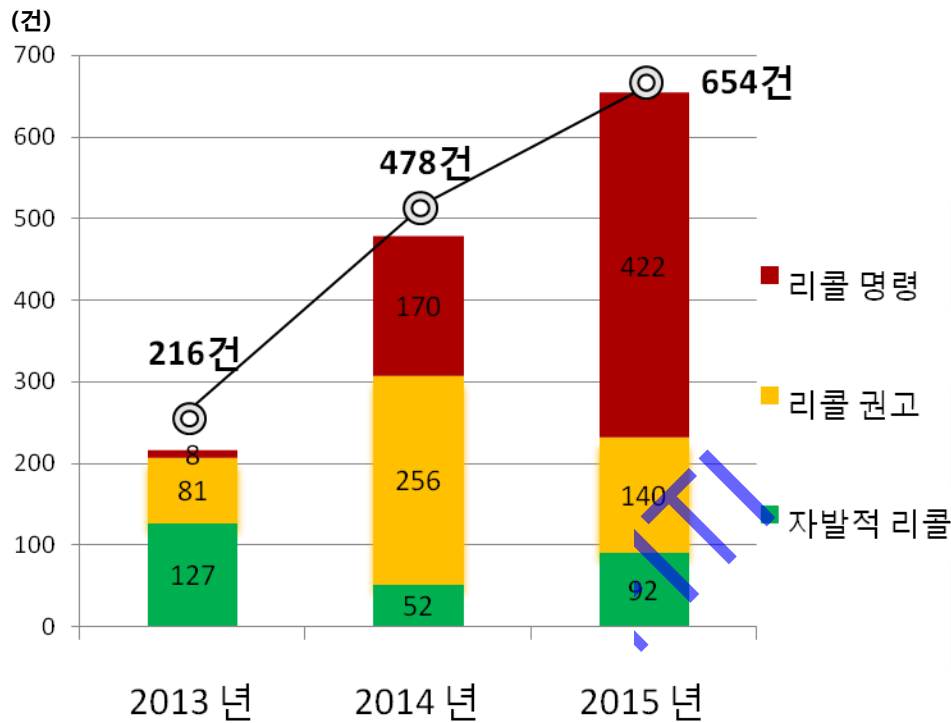
-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제품을 유통시장 또는 소비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동법 제11조)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등에 적용

리콜의 효과






II. 리콜제도 가이드

03 제품 리콜 현황은?



□ 리콜이행업체 :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 등

리콜이행업체	품목	사유
제조업체 W사	 완구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 초과
수입업체 E사	 스케이트 보드	내구력 시험에서 제품 파손
판매업체 P사	 아동복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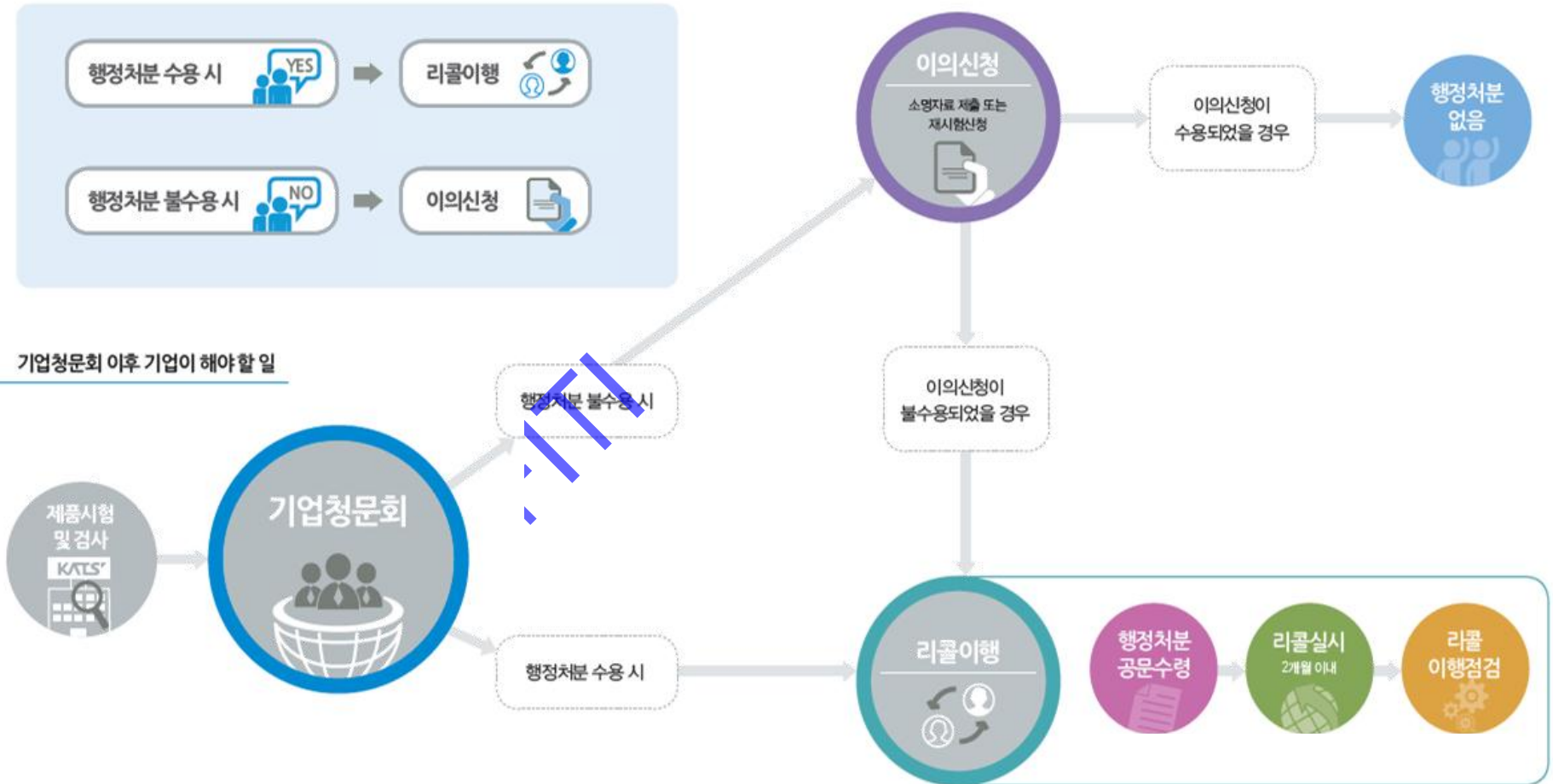
□ 리콜 현황 : 2013년 216건에서 2015년 654건으로 3배 이상 증가

□ 리콜 사례 : 의류, 완구, 물놀이기구, 고령자용 보행차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중인 제품

II. 리콜제도 가이드

04 기업청문회 이후 기업이 해야 할 일은?

□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과 이의신청 중 선택



II. 리콜제도 가이드

04-1 이의신청 방법은?

□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과 이의신청 중 선택

이의신청

소명자료 제출

- 문서자료를 통한 소명
- 소명을 위한 문서자료는 공문에 첨부

재시험신청

-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 재시험
- 시험성적서 구비 시 가능
- 시료구입 및 시험비용 업체 부담

공문내용

- 업체명
- 대상품목 및 모델명
- 부적합통보내용
- 이의신청 사유
- 첨부 : 각종 소명자료 등

공문내용

- 업체명
- 대상품목 및 모델명
- 부적합통보내용
- 재시험신청 사유
- 관련비용 청구 연락처
- 첨부 : 시험성적서 등

TIP 이의신청 접수방법

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해 주세요

수신처 : (우)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II. 리콜제도 가이드

04-2 안전성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는?

□ 제품의 위해정도에 따라 리콜명령, 리콜권고, 개선조치권고 등으로 구분

행정처리		예시	
수거등의 명령 (리콜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내용이 중한 결함일 경우 - 수거·교환등의 리콜이행 - 언론 등에 공표 	<p>품목</p> <p>합성수지 어린이용품</p> <p>사유</p> <p>납 기준치 초과</p>	
수거등의 권고 (리콜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내용이 경한 결함일 경우 - 수거·교환등의 리콜이행 - 필요시 언론 등에 공표 	<p>품목</p> <p>이륜자전거</p> <p>사유</p> <p>전조등 미비</p>	
수거등의 권고 (개선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내용이 표시사항 결함일 경우 - 수거·교환등의 의무는 없으며 - 부적합 내용개선 후 판매 가능 	<p>품목</p> <p>가정용 섬유제품</p> <p>사유</p> <p>표시사항 미비</p>	

TIP

결함구분

높음 ↑ 위해정도 ↓ 낮음	중한 결함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의 안전요건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화학적 결함 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기계·물리적 결함
	경한 결함	안전기준의 안전요건 부적합 중에서 '중한 결함' 이외의 결함을 의미
	표시사항 결함	제품 안전기준에 명시된 표시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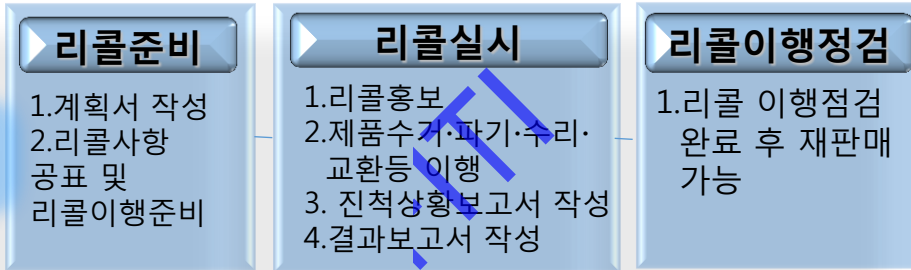
II. 리콜제도 가이드

04-3 리콜이행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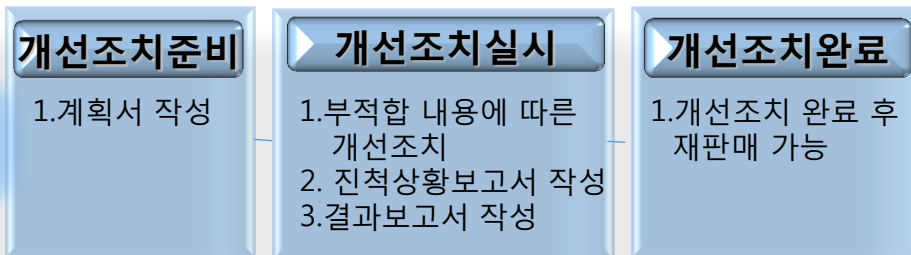
□ 리콜명령·권고 또는 개선조치권고는 행정처분 공문 수령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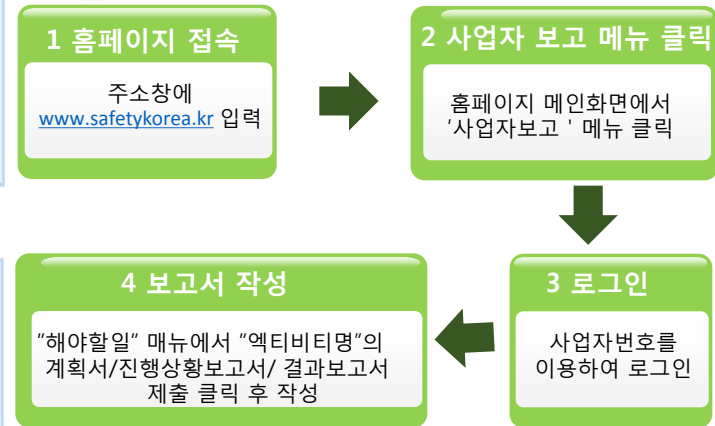
리콜명령·권고



개선조치권고



TIP 인터넷을 이용한 보고서 입력방법



II. 리콜제도 가이드

04-4 리콜 이행점검 시 확인사항은?

-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함께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리콜 이행점검 실시

확인 사항		증빙자료 예시
제품회수율 확인	리콜대상 제품 수량 확인	수입제품 : 수입신고필증/인보이스, 입고대장(현황), 작업지시서, 전산대장(ERP 등) 국내제조 : 생산대장, 작업지시서, 입고대장(현황) 등
	판매(출고) 제품 수량 확인	출고대장(현황), 판매대장(현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산대장(ERP) 등
	회수된 제품 수량 확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택배영수증(교환 등), 수리/교환 확인서, 전산대상(ERP) 등
제품 조치 확인	제품사진(수거/파기/분해 등), 수출신고필증, 폐기영수증, 시험성적서 등	
리콜 공표 확인	신문/TV, 광고계약서, 홈페이지(공지사항 등),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공문 발송, 우편발송현황(영수증 등), 매장 pop 설치, 전화통화 현황, 방문현황, 이메일 발송 등	
관련 보고서 확인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진척상황보고서, 결과 보고서	

II. 리콜제도 가이드

04-5 리콜조치 불이행 시 받는 처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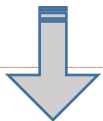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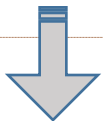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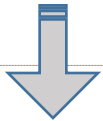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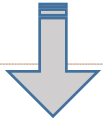
불이행 유형	처분
리콜명령 불이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41조)
리콜권고 불이행	리콜명령 및 언론공표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0조)
조치 결과 등의 사항 미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43조)

III. 리콜운용('17년 제M차 안전성 조사 진행절차(1단계))

제M차 조사 계획수립

국가기술표준원(제품시장관리과, D-3개월)

-안전성조사 예고제 실시(연중 조사계획 공개('17.2.3. 보도))



[참고1] '17년 주요안전성 조사 계획(보도자료 ('17.2.3))

정기 안전성조사 세부계획 (생활용품/어린이용품)

1. 정기 안전성조사 1회차 (17.1월-3월)

- **중점관리품목 : 학생복, 학생용가방**
- 학용품, 휴대용레이저용품, 바퀴달린 운동화, 아동용 섬유제품(운동화), 어린이용 가죽제품(구두)

2. 정기 안전성조사 2회차 (17.4월-6월)

- **중점관리품목 : 유·아동복,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 유모차, 유아용 삼륜차, 보행기, 합성수지제 어린이 제품, 유아용 신발 및 모자, 어린이 신규관리대상, 롤러스포츠포호장구,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운동용안전모, 스케이트보드, 이륜자전거, 승차용안전모,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킥보드

3. 정기 안전성조사 3회차 (17.7월-9월)

- **중점관리품목 : 학생복, 학생용 가방, 완구**
- 스포츠용 구명복, 공기주입보트, 수영복,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선글라스, 고령자용보행보조차, 고령자용보행차, 고령자용목욕의자, 우의, 우산 및 양산

4. 정기 안전성조사 4회차 (17.10월-12월)

- **중점관리품목 : 유·아동복, 어린이용장신구**
- 가정용섬유제품(성인), 창문블라인드, PVC관, 가구, 휴대용 사다리, 텐트, 스테인레스수세미, 건전지, 가스라이터, 아동용서랍장, 유아용의자, 어린이용이단침대, 유아용침대, 스노보드, 온열팩(주머니 난로), 가죽제품

2017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공지

- 2017.2.3.(금) -

1. 중점관리품목 위주의 정기 안전성조사 실시

□ 추진방향

- 부적합률이 높은 중점관리품목, 위해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정기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사업자에게 제품안전 관리 의식 계고

□ 주요내용

- (중점관리품목) 부적합률이 높고, 계절별 유통수량, 판매시즌, 사용빈도 등을 고려해 10대 중점관리품목을 선정-운영

2017년 중점관리품목

(생활용품)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장신구, 학생용가방, 학생복

(전기용품) LED등기구, 형광등용안광기, 직류전원장치, 충전지,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 '16년 중점관리품목인 스케이트보드, PVC관, 멀티콘센트 등 4개 품목은 리콜조치율이 감소함에 따라 '17년 중점관리품목에서 제외

· ('15년~'16년) : 스케이트보드(5.8%→6.3%), PVC관(2.9%→4.8%), 멀티콘센트(1.8%→0%)

- '16년에 리콜조치율이 높았던 어린이용장신구, 학생복,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와 개선조치율이 높은 충전지 4개 품목을 '17년에 중점관리

· ('15년~'16년) : 어린이용장신구(14.7%→20%), 학생용교복(0%→12.1%),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14.3%→17.9%), 충전지(81.3%→93%)

- 전년에 이어 '17년에도 유통수량이 많은 완구, 유아동복, 학생용가방, LED등기구 등 6개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속운영

· 6개 품목 : 완구, 유아동복, 학생용가방,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형광등용안광기

[참고1] '17년 주요안전성 조사 계획(보도자료 ('17.2.3))

수시 기획형 안전성조사 계획

SNS, 블로그, 포탈검색, 언론 등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소비자 요구를 즉시 반영하여 안전성조사 품목 선정 및 조사 착수

-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생활밀착형 품목 선정 및 안전성조사 시기 등을 결정·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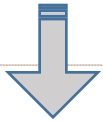


III. 리콜운용('17년 제M차 안전성 조사 진행절차(2단계))

제M차 조사 계획수립

국가기술표준원(제품시장관리과, D-3개월)

-안전성조사 예고제 실시(연중 조사계획 공개('17.2.3.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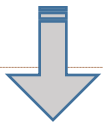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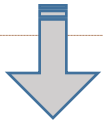


안전성조사

국가기술표준원(안전기준 적합여부)

-시료구입(한국제품안전협회, D-2개월): 오프라인/온라인 등

-시험·검사기관에 분석(D-2개월 ~ D-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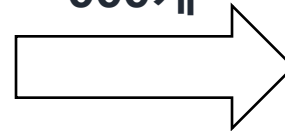


[참고2] 제2차 안전성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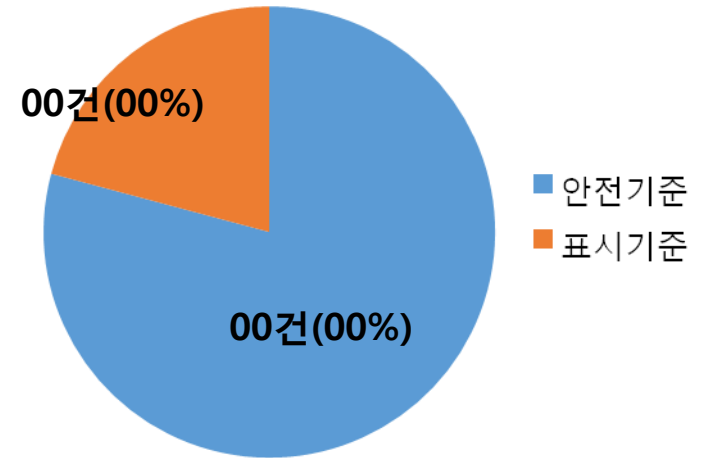
예) 제M차 조사항목(12개)

- 완구
- 유아용 섬유제품
- 아동용 섬유제품
- 스케이트보드
- 보행기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유모차
- 유아용캐리어
- 유아용삼륜차
- 유아용의자
- 유아용침대
- 일회용기저귀(유아용)

000개



부적합 사항(0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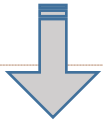


III. 리콜운용('17년 제M차 안전성 조사 진행절차(3단계))

제M차 조사 계획수립

국가기술표준원(제품시장관리과, D-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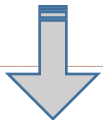
-안전성조사 예고제 실시(연중 조사계획 공개('17.2.3. 보도))



안전성조사

국가기술표준원(안전기준 적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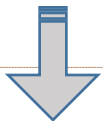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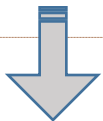
-시료구입(한국제품안전협회,D-2개월): 오프라인/온라인 등
-시험·검사기관에 분석(D-2개월 ~ D-1개월)




리콜 조치

국가기술표준원(리콜 명령 또는 권고)

- **청문회(D-1개월)**->**이의신청(7일)**->**자문위원회(D-15일)**->**공표(D)**



[참고3] 공표(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7년 2월 1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15(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리콜제품 전시 및 설명 : 2.15(수) 10:3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군포, 교육광)

배포일시	2017. 2. 15. (수)	담당부서	제품시장관리과
담당과장	오경희 과장(043-870-5420)	담당자	강민구 사무관(043-870-5427) 이광은 연구사(043-870-5425)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 45개업체 47개제품 리콜조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16년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16.11 ~'17.1)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업체 47개 제품**(붙임참조)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하였음

*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

-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 5품목 146개 업체 169개 제품
- 전기를 사용하는 주방용품 : 5품목 89개 업체 108개 제품
- 어린이제품 : 9품목 323개 업체 351개 제품

** LED등기구 등 전기용품(3품목 19업체 20개 제품), 후드믹서(5업체 6개 제품) 및 학습완구 등 어린이제품(5품목 21업체 21개 제품)

○ 특히, 리콜명령대상 전기용품 中 주요부품(캐패시터, 퓨즈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업체(19개 업체 20개 제품)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임

* 주요부품 변경 : 16개 업체 17개 제품

** 인증 도용 : 3개 업체 3개 제품



유명 아동제품서 유해물질

45개 업체 47개 제품 리콜조치 납·카드뮴 등 기준치 크게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기용품, 주방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45개 업체 47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 4개와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1개, 학습완구 4개, 스포츠용품 1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크록스 포키즈에서 출시한 어린이 모자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62배, 베어파우의 어린이 부츠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추신경장애 유발물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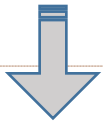
납이 각각 129배와 13.4배에 달했다.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진 카드뮴도 3.7배 초과 검출됐다. 자라의 어린이용 가죽 장화는 만성 인후염을 유발할 수 있는 6가 크로뮴이 기준치를 3.8배 넘었다. 알로엔투의 '포레스트 어린이 이불·베개·요 세트'와 '파스텔 민트 쉼살 베개 세트'는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12~29.3% 많았다.

'탈렌트 키즈'의 'TS베이스털 단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07배, 납이 1.1배, pH가 20% 기준치를 초과했고, '선업스포츠'의 '스쿨2 에바 방한 실내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34배, 납이 1.5~9.7배, 카드뮴이 1.1~1.7배 더 많이 나왔다. 유·아동복 전문업체인 '포레즈'의 어린이 장갑과 부츠도 각각 pH(8%)와 납(6배)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고, '자주'의 '아동용 버드 육살화'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442배 더 나왔다. '오가니팜'의 '라비플 여아 보행기 덧신'은 납과 카드뮴이 각각 기준치를 20배, 2.2배 넘어섰다.

III. 리콜운용('17년 제M차 안전성 조사 진행절차(4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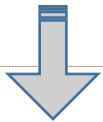
제M차 조사 계획수립

- 국가기술표준원(제품시장관리과, D-3개월)
- 안전성조사 예고제 실시(연중 조사계획 공개('17.2.3.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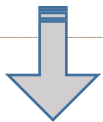
안전성조사

- 국가기술표준원(안전기준 적합여부)
- 시료구입(한국제품안전협회,D-2개월): 오프라인/온라인 등
- 시험·검사기관에 분석(D-2개월 ~ D-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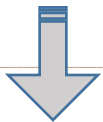
리콜 조치

- 국가기술표준원(리콜 명령 또는 권고)
- 청문회(D-1개월)->이의신청(7일)->자문위원회(D-15일)->공표(D)



리콜 이행 점검 (D+2개월 후)

- 국표원, 제품안전협회, 소비자단체(모니터링요원)
- 리콜기업 및 유통매장 방문(국표원+협회)
- 온라인쇼핑몰 유통조사(협회)
- 소매점, 재래시장, 문방구 등 단속(모니터링요원)



[참고4] 모니터링 요원 활동('06년~)



III. 리콜운용('17년 제M차 안전성 조사 진행절차(5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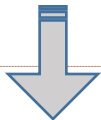
제M차 조사 계획수립

- 국가기술표준원(제품시장관리과, D-3개월)
- 안전성조사 예고제 실시(연중 조사계획 공개('17.2.3.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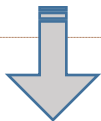
안전성조사

- 국가기술표준원(안전기준 적합여부)
- 시료구입(한국제품안전협회,D-2개월): 오프라인/온라인 등
- 시험·검사기관에 분석(D-2개월 ~ D-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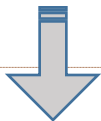
리콜 조치

- 국가기술표준원(리콜 명령 또는 권고)
- 청문회(D-1개월)->이의신청(7일)->자문위원회(D-15일)->공표(D)



리콜 이행 점검
(D+2개월 후)

- 국표원, 제품안전협회, 소비자단체(모니터링요원)
- 리콜기업 및 유통매장 방문(국표원+협회)
- 온라인쇼핑몰 유통조사(협회)
- 소매점, 재래시장, 문방구 등 단속(모니터링요원)



점검평가 및 사후관리

- 국가기술표준원
- 불이행 기업(징역 및 벌금), 미보고(과태료)

[참고5] 이행점검 강화 발표('16.2.23)



아주경제

2016년 02월 23일 화요일 023면 메트로

리콜제품 버젓이 유통... 감시 강화한다

산자부, 민간 리콜이행점검팀 발족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 도입·확대
온라인쇼핑몰 결제·판매 등 차단
적발기업 반복과징금 조항도 신설

리콜제품을 유통시키는 등 리콜 행정처분을 불이행한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 제품 유통을 감시할 수 있는 전담팀도 신설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협회·시협인증기관·소비자단체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콜 이행점검팀'을 발족했다.

리콜 이행점검팀은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온·오프라인 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유해물질 기준치를 엄격히 초과해도 리콜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해왔다. 또 조사품목을 확대하면서 결함보상 처분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국표원의 리콜조치 현황을 보면 2013년 216건에서 2014년 372건, 2015년에는 586건으로 급증했다. 안전성조사의 경우는 2013년 4542개에서 2014년 4533개, 2015년에는 4864개로 제품이 늘었다. 하지만 해당기업의 불이행 등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도 있어 관리와 유통 감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점검팀은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히 점검할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제로 구성했다.

특히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리콜명령 이행까지 반복

적 과징금 부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기로 했다. 온라인 유통감시와 관련해서는 위해상품차단 시스템 도입을 기존 11개에서 우체국쇼핑·농협 A마켓 등 20개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표원이 위해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각 유통사가 매장 바코드를 차단하거나 홈페이지상 결제진행을 차단한다.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통합구매·배송, 정보전달(포털·케이블TV), 교육서비스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각각 리콜관련 감시체계가 추가될 예정이다.

전인영 국표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리콜 행정처분 수준 강화와 조사품목 확대로 '결함보상(리콜)' 처분이 크게 늘었다"며 "하지만 불이행 사례 등 해당 제품이 계속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규하 기자 judi@

한국일보

2016년 02월 23일 화요일
A19면 경제

리콜 명령 이행 않는 기업 과태료 최대 500만원 즉시 부과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앞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리콜 행정처분 수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와 유통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제품 수거 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기업이 리콜조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즉시 시행하고, 이행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이광은 연구사

Tel. 043-870-5425, Fax. 043-870-5674

